|  |  |  |
| --- | --- | --- |
| **재생에너지발전과 관련한 관리규정**  發改能源[2006] 제13호  각 성․자치구․작할시 및 계획단독배정 시, 신쟝(新疆) 생산건설병단 발전개혁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 물가국, 중국인민은행, 전력감독위원회, 국가전력수송망회사, 남방전력수송망회사, 중국 화넝(華能)그룹회사, 중국 따탕(大唐)그룹회사, 중국 화뗀(華電)그룹회사, 중국 궈뗀(國電)그룹회사, 중국 전력투자그룹회사, 중국 창쟝싼샤(長江三峽)공사 개발총회사, 선화(神華)그룹 유한책임회사, 국가개발투자회사, 국가개발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민생은행: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을 관철하고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재생에너지에발전과 관련한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발급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별첨: 『재생에너지발전 관리규정』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2006년 1월 5일  **재생에너지발전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이 칭하는 재생에너지발전에는 수력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발전(농림폐기물의 직접연소 및 가스화 발전, 쓰레기연소 또는 매립에 의한 가스발전, 메탄가스발전 포함), 태양에너지발전, 지열에너지발전 및 해양에너지발전 등을 포함한다.  **제3조** 법률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행정인가를 받고 송전망에 접속한,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나 송전망이 없는 지역의 독립적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는 중앙과 지방 분급관리를 실시한다.  국가 발전개혁위원회는 전국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정책을 제정하여 국가가 확인 인가하거나 심사 인가하여야 하는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성급 인민정부 재생에너지 관리부서는 자기 관할구역 내 지방권한에 속하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재생에너지발전계획은 동급 전력생산계획에 편성한다.  **제2장 프로젝트 관리**  **제5조**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은 계획에 따라 건설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발전계획 제정 시에는 자원의 특성, 시장수요, 생태환경 등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원의 우세를 발휘시키고 규모효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프로젝트건설은 성급 이상 발전계획과 건설구도의 전반요구에 부합하고 합리적으로 질서 있게 개발하여야 한다.  **제6조** 주요 강하천에 건설하는 수력발전 프로젝트와 25만 ㎾급 이상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5만 ㎾급 이상의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확인 인가하거나 심사 인가한다. 기타 프로젝트는 성급 인민정부 투자주관부서가 확인 인가하거나 심사 인가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국가의 정책, 자금지원을 요하는 바이오매스발전, 지열에너지발전, 해양에너지발전 태양에너지발전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신청한다.  **제7조**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의 송전망접속 전기가격은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각종유형의 재생에너지발전의 특점과 각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에 유리하고 경제적으로 합리한 원칙에서 확정하며 재생에너지 개발이용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적시에 소정하여 공포한다.  입찰하는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의 송전망접속 전기가격은 낙찰 시에 확정한 가격을 집행한다. 송전망기업이 수력발전 전기를 제외한 재생에너지발전 전기의 매입, 매출로 증가한 비용은 전국범위에서 전기소비자가 분담하며 구체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8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재생에너지발전 통계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성급 인민정부 에너지주관부서는 재생에너지발전의 통계작업을 관리하고 종합하여 매년 2월 10일 전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재생에너지발전기업의 운영을 감독관리하고 발전기업과 송전망기업간의 관계를 조율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송전망접속 및 비용결산을 감독 관리한다.  **제3장 송전망기업의 책임**  **제10조** 성급(성급 포함) 이상 송전망기업은 성급(성급 포함) 이상 인민정부가 제정한 재생에너지발전의 중, 장기 기획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의 부대송전망 건설기획을 제정하여 국가 및 성급 송전망발전기획에 편성하고 성급 인민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은 다음 실시한다.  **제11조** 송전망기업은 기획요구에 따라 송전망의 설계와 연구논증작업을 적극 전개하고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건설 진도와 수요에 따라 송전망을 건설하고 개조함으로써 재생에너지발전량을 전부 송전망에 접속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 송전망 접속시스템은 송전망기업이 구축하고 관리한다.  직접 송전망에 접속하는 수력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발전 등 대, 중형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 송전망 접속시스템은 송전망기업이 투자하고 재산권의 분계지점은 발전소(지역) 변전소 외 첫 전선주이다.  직접 배전망에 접속하는 태양에너지발전, 매탄가스발전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 배전망 접속시스템은 원칙상 송전망기업이 투자하여 건설한다. 발전기업(개인)이 송전망기업과 협상하여 합의를 보고 투자하여 건설할 수도 있다.  **제13조** 송전망기업은 그가 매입한 재생에너지발전량을 계량, 통계하고 성급 송전망기업은 매년 1월 20일 전에 이를 총괄하여 성급 인민정부 에너지주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그 사본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발전기업의 책임**  **제14조** 발전기업은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하고 국가가 정한 재생에너지발전 분담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발전할당지표 및 관리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대형발전기업은 우선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의 건설, 운영, 관리는 국가와 전력업계가 정한 관련 법률, 법규, 기술표준, 프로세스규범에 부합하여야 하고 부지절약에 깊은 주의를 돌리며 환경, 안전 등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16조** 발전기업은 국가의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 관리규정에 따라 설계, 부지이요, 수자원보호, 환경보전 등 전 단계 준비작업을 잘하고 법에 따라 행정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지 않고 자의로 착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인가를 받은 프로젝트는 규정기간 내에 착공하여 건설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원 프로젝트인가부서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프로젝트를 양도, 경매하거나 투자자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 건설은 국가 기본건설 프로젝트 관련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환경, 생태건설, 토사유실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시공관리를 보강하여 공사를 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발전기업은 정품 발전계량시스템을 설치하고 매년 1월 15일 전에 성급 에너지주관부서에 그 전연도 발전기용량, 발전량 및 송전망 접속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19조** 송전망기업과 발전기업 간에 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을 보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나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재결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 이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과 국가에 손실을 조성한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또는 성급 인민정부가 감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손실을 확인하고 확정한 손실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 벌금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21조** 이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집행한다.  **제22조** 이 규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해석한다. |  | **可再生能源发电有关管理规定**  发改能源[2006]13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新疆生产建设兵团发展改革委、经委（经贸委）、物价局，中国人民银行，电监会，国家电网公司、南方电网公司，中国华能集团公司、中国大唐集团公司、中国华电集团公司、中国国电集团公司、中国电力投资集团公司、中国长江三峡工程开发总公司、神华集团有限责任公司、国家开发投资公司，国家开发银行、中国工商银行、中国建设银行、中国银行、中国农业银行、中国民生银行：  　　为了贯彻落实《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规范可再生能源发电项目管理，促进我国可再生能源发电产业的更快发展，特制定《可再生能源发电有关管理规定》，现印发你们，请按照执行。  附件：《可再生能源发电有关管理规定》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二○○六年一月五日  **可再生能源发电有关管理规定**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促进可再生能源发电产业的发展，依据《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和《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特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所称的可再生能源发电包括：水力发电、风力发电、生物质发电（包括农林废弃物直接燃烧和气化发电、垃圾焚烧和垃圾填埋气发电、沼气发电）、太阳能发电、地热能发电以及海洋能发电等。  **第三条** 依照法律和国务院规定取得行政许可的可再生能源并网发电项目和电网尚未覆盖地区的可再生能源独立发电项目适用本规定。  **第四条** 可再生能源发电项目实行中央和地方分级管理。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负责全国可再生能源发电项目的规划、政策制定和需国家核准或审批项目的管理。省级人民政府能源主管部门负责本辖区内属地方权限范围内的可再生能源发电项目的管理工作。  　　可再生能源发电规划应纳入同级电力规划。  **第二章　项目管理**  **第五条** 可再生能源开发利用要坚持按规划建设的原则。可再生能源发电规划的制定要充分考虑资源特点、市场需求和生态环境保护等因素，要注重发挥资源优势和规模效益。项目建设要符合省级以上发展规划和建设布局的总体要求，做到合理有序开发。  **第六条** 主要河流上建设的水电项目和25万千瓦及以上水电项目，5万千瓦及以上风力发电项目，由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核准或审批。其他项目由省级人民政府投资主管部门核准或审批，并报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备案。需要国家政策和资金支持的生物质发电、地热能发电、海洋能发电和太阳能发电项目向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申报。  **第七条** 可再生能源发电项目的上网电价，由国务院价格主管部门根据不同类型可再生能源发电的特点和不同地区的情况，按照有利于促进可再生能源开发利用和经济合理的原则确定，并根据可再生能源开发利用技术的发展适时调整和公布。  　　实行招标的可再生能源发电项目的上网电价，按照中标确定的价格执行；电网企业收购和销售非水电可再生能源电量增加的费用在全国范围内由电力用户分摊，具体办法另行制定。  **第八条**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负责制定可再生能源发电统计管理办法。省级人民政府能源主管部门负责可再生能源发电的统计管理和汇总，并于每年2月10日前上报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第九条** 国家电力监管委员会负责可再生能源发电企业的运营监管工作，协调发电企业和电网企业的关系，对可再生能源发电、上网和结算进行监管。  **第三章　电网企业责任**  **第十条** 省级（含）以上电网企业应根据省级（含）以上人民政府制定的可再生能源发电中长期规划，制定可再生能源发电配套电网设施建设规划，并纳入国家和省级电网发展规划，报省级人民政府与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批准后实施。  **第十一条** 电网企业应当根据规划要求，积极开展电网设计和研究论证工作，根据可再生能源发电项目建设进度和需要，进行电网建设与改造，确保可再生能源发电全额上网。  **第十二条** 可再生能源并网发电项目的接入系统，由电网企业建设和管理。  　　对直接接入输电网的水力发电、风力发电、生物质发电等大中型可再生能源发电项目，其接入系统由电网企业投资，产权分界点为电站（场）升压站外第一杆（架）。  　　对直接接入配电网的太阳能发电、沼气发电等小型可再生能源发电项目，其接入系统原则上由电网企业投资建设。发电企业（个人）经与电网企业协商，也可以投资建设。  **第十三条** 电网企业负责对其所收购的可再生能源电量进行计量、统计，省级电网企业应于每年1月20日前汇总报送省级人民政府能源主管部门，并抄报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第四章　发电企业责任**  **第十四条** 发电企业应当积极投资建设可再生能源发电项目，并承担国家规定的可再生能源发电配额义务。发电配额指标及管理办法另行规定。  　　大型发电企业应当优先投资可再生能源发电项目。  **第十五条** 可再生能源发电项目建设、运行和管理应符合国家和电力行业的有关法律法规、技术标准和规程规范，注重节约用地，满足环保、安全等要求。  **第十六条** 发电企业应按国家可再生能源发电项目管理的有关规定，认真做好设计、用地、水资源、环保等有关前期准备工作，依法取得行政许可，未经许可不得擅自开工建设。  　　获得行政许可的项目，应在规定的期限内开工和建成发电。未经原项目许可部门同意，不得对项目进行转让、拍卖或变更投资方。  **第十七条** 可再生能源发电项目建设，应当严格执行国家基本建设项目管理的有关规定，落实环境保护、生态建设、水土保持等措施，加强施工管理，确保工程质量。  **第十八条** 发电企业应该安装合格的发电计量系统，并在每年的1月15日前将上年度的装机容量、发电量及上网电量上报省级人民政府能源主管部门。  **第五章　附　则**  **第十九条** 电网企业和发电企业发生争议，可以根据事由向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或国家电力监管委员会申请调解，不接受调解的，可以通过民事诉讼裁处。  **第二十条** 不执行本规定造成企业和国家损失的，由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或省级人民政府委托的审计事务所进行审查核定损失，按照核定的损失额赔偿损失。有关罚款办法另行制定。  **第二十一条** 本规定自发布之日起执行。  **第二十二条** 本规定由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负责解释。 |